

2014년 경찰승진 정답 및 해설

문 1] 정답 ②

- ㉠ (X)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 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과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
- ㉡ (X) 본 법률조항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범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1992.4.28, 90헌바24).
- ㉢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13.6.13, 2013도1685)
- ㉣ (O)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문 2] 정답 ②

- ① (O) 대판 2002.11.26, 2002도2998
- ② (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범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불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2.24, 97도183).
- ③ (O) 대판 2009.2.26, 2006도9311
- ④ (O)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3.26, 2001도6503).

문 3] 정답 ①

- ① (X) ② (O)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범이건 불문범이건 상관 없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

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③ (O) 대판 1997.3.14, 96도1639

④ (O) 대판 1992.1.11, 91도2951

문 4] 정답 ②

- ① (O) 대판 2002.10.11, 2002도4315
- ② (X)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3.22, 93도3612).
- ③ (O) 대판 1990.5.22, 90도580
- ④ (O) 대판 2007.10.26, 2005도8822

문 5] 정답 ①

- ① (X)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1995.9.15, 94도2561).
- ② (O) 대판 2010.2.11, 2009도9807
- ③ (O)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위에 채권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서 설정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위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도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위 경매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아간 경우라면, 비록 채권자가 민사법상 이의의 효부없는 공탁금수령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존재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는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막연하게나마 자기의 행위에 대한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 채권자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8.12.13, 88도184).
- ④ (O) 대판 2001.8.21, 2001도3295

문 6] 정답 ④

- ① (O) 대판 1979.8.21, 79도1249
- ② (O) 대판 1977.6.28, 77도403
- ③ (O) 대판 2010.2.11, 2009도9807
- ④ (X) 과실일수죄와 과실교통방해죄는 모두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제189조 참고).

문 7] 정답 ④

- ㉠ (○) 대판 1997.6.24, 97도1075
- ㉡ (○) 대판 1985.1.15, 84도2397
- ㉢ (○) 제324조의5 참조

문 8] 정답 ③

- ① (○) 대판 2003.9.26, 2003도3000
- ② (○) 현직 군수로서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아니다(대판 2011.2.24, 2010도14720). ※ 피고인이 “이제 후보자 신분이 되는 만큼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음식물의 1인당 비용도 결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위 모임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측근들은 다음날인 오전에 대책회의까지 하였다.
- ③ (X)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 ④ (○) 대판 2006.9.8, 2006도148

문 9] 정답 ④

- ① (○) 대판 1995.2.24, 94도3163
- ② (○) 대판 2009.5.28, 2009도2682
- ③ (○) 옳음
- ④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제10조②). ※ 필요적 감경이다.

문 10] 정답 ①

- ① (X)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05.11, 2006도1993).
- ② (○) 대판 1978.6.27, 76도2196
- ③ (○) 대판 1975.3.25, 74도2882
- ④ (○) 대판 1995.11.10, 95도2088

문 11] 정답 ③

- ① (○) 대판 2011.1.13, 2010도9330
- ②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상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 ③ (X)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 ④ (○) 대판 2011.6.9, 2010도10677

문 12] 정답 ①

- ① (X) 상해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② (○) 옳음
- ③ (○) 대판 2006.9.14, 2004도6432
- ④ (○) 대판 1976.5.25, 75도1549

문 13] 정답 ②

- ① (○) 대판 2009.6.23, 2009도2994
- ② (X)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9.11, 2007도7204).
- ③ (○) 대판 2008.4.10, 2008도1274
- ④ (○) 대판 1995.9.5, 95도577

문 14] 정답 ②

- ① (○) 대판 2000.2.25, 99도1252
- ② (X)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31조 제3항). ※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③ (○) 대판 2005.4.29, 2003도6056
- ④ (○) 대판 1985.2.26, 84도2987

문 15] 정답 ①

- ① (X)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9.6.25, 2009도3505)
- ② (○) 대판 2003.2.28, 2002도7335
- ③ (○) 대판 2004.6.25, 2004도1751
- ④ (○) 대판 2003.1.10, 2002도4380

문 16] 정답 ①

- ① (O) 대판 2007.6.29, 2005도3832
- ② (X)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84.11.27, 84도2263)
- ③ (X)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힘껏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발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가 움직임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약 10초간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의 맥박과 숨소리가 끊겨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잡자는 것처럼 위장해 놓은 뒤 방안에 있던 강취물들을 가방에 넣고 사건 장소를 빠져나온 경우 강도살인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2.8, 2001도6425).
- ④ (X)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매광고 등의 행위는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한 위 변사자들의 자살행위에 어떠한 물질적 혹은 유형적 기여도 하지 못한 점, 위 변사자들의 자살에 사용된 청산염의 효능에 대하여는 이미 위 자살 관련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자살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문 17] 정답 ②

- ① (O) 대판 1990.2.13, 89도1406
- ② (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 ③ (O) 대판 2005.12.9, 2005도7527
- ④ (O)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문 18] 정답 ②

- ① (O)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② (X)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5.10, 90도2102).

- ③ (O) 대판 1991.5.10, 90도2102).
- ④ (O)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6.22, 82도705)

문 19] 정답 ②

- ① (O) 대판 1984.5.15, 84도655
- ② (X)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4.26, 83도323)
- ③ (O) 대판 1983.9.13, 80도277
- ④ (O) 대판 1998.5.26, 98도1036

문 20] 정답 ①

- ① (X)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13.6.21,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 ② (O) 대판 1976.9.14, 76도2072
- ③ (O) 대판 2008.1.31, 2007도8011
- ④ (O)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8.1.17, 2007도8485).

문 21] 정답 ④

- ① (O) 대판 2006.1.13., 2005도6791
- ② (O)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

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③ (O) 대판 2013.1.16, 2011도7164

④ (X)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대판 1995.7.25, 94도1351)

문 22] 정답 ②

① (O) 대판 2008.2.14, 2007도8155

② (X)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1433)

③ (O) 대판 2012.11.29, 2012도10392

④ (O) 대판 2001.10.9, 2001도3594

문 23] 정답 ②

① (X)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5.8, 2007도11322).

② (O) 대판 2009.12.24, 2009도9667

③ (X)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④ (X)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9.8.20, 2009도3452).

문 24] 정답 ②

㉠ (성립 ○)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10.15, 2007도9334).

㉡ (성립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2.27, 2005도6404).

㉢ (성립 ×)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9.1.29, 98도3240).

㉣ (성립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문 25] 정답 ④

① (O)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O) 대판 2011.5.13, 2011도1765

③ (O) 대판 2010.7.29, 2010도5795

④ (X) [1]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증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증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07.3.15, 2006도2704).

문 26] 정답 ④

① (O) 대판 2002.7.12, 2002도745

② (O) 피고인이 乙의 영업점 내에 있는 乙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乙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7.12, 2012도1132)

③ (O) 대판 2012.4.26, 2010도11771

④ (X)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6.12, 2008도2440).

문 27] 정답 ③

① (O) 날치기 수범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O) 대판 2010.9.30, 2010도7405

③ (X)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④ (O) 대판 1981.3.24, 81도409

문 28] 정답 ①

① (X)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전화 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3.4.26, 2011도10797).

② (O) 대판 2010.6.10, 2010도1777

③ (O) 대판 1997.9.9, 97도1561

④ (O) 대판 2002.2.5, 2001도5789

문 29] 정답 ③

① (O) 대판 1996.9.20, 95도1728

② (O) 대판 1995.3.10., 94도2422

③ (X) 피고인이 甲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甲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甲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甲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甲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甲회사 경영진의 반응,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甲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3.4.11, 2010도13774)

④ (O)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1.27, 2011도16044).

문 30] 정답 ①

① (X)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② (O) 대판 1998.4.14, 98도292

③ (O)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9.8, 2000도258)

④ (O) 대판 1996.3.22, 95도2824

문 31] 정답 ③

㉠ (O) 대판 2009.12.24, 2007도2484

㉡ (X)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 (O) 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통상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라고도 한다]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각 체결하고 甲 회사의 대리점으로 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의 기존 가입 가맹점을 甲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판매업자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회사와 신입관계에 기하여 甲 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5.10., 2010도3532)

㉣ (X)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문 32] 정답 ②

① (O) 대판 1976.11.23, 76도3067

② (X) 甲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갑이 을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갑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고 한 사

례(대판 2004.12.09, 2004도5904)

③ (O) 대판 2004.4.16, 2004도353

④ (O) 대판 1995.1.20, 94도1968

문 33] 정답 ③

① (O) 대판 1991.10.22, 91도2090

② (O) 대판 1982.7.27, 82도223

③ (X)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8, 2007도2590)

④ (O) 대판 1992.7.28, 92도1345

문 34] 정답 ④

① (O) 대판 2005.11.10, 2005도6604 ※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 등록을 요하는 동산은 (자동차, 중기)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판단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입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자기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1]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보유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2]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소유물에 한한다. 그런데 이 사건 승용차는 렌트카가 구입하여 보유 중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아직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렌트카 혹은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③ (O) 대판 1992.12.8, 92도1653

④ (X)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1.12.8, 2010도4129).

문 35] 정답 ③

① (O) 대판 2010.5.13, 2010도1040 ※ 대리권·대표권 있는 자가 그 권한 범위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O) 대판 1989.8.8, 88도2209

③ (X)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30, 2006도7777).

④ (O) 대판 2000.8.22, 2000도2393

문 36] **정답** ④

- ① (O) 대판 1997.8.29., 97도675
 ② (O) 대판 2008.2.14, 2005도4202
 ③ (O) 대판 2011.9.8, 2009도13371
 ④ (X)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관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기관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문 37] **정답** ④

- ㉠ (성립 ○)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 (성립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0.09, 2000도4993)
 ㉢ (성립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 (성립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

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

문 38] **정답** ③

- ① (O)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② (O)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26, 2003도8226).
 ③ (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3.24, 2000도20)
 ④ (O) 대판 1987.2.10, 85도897 ※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39] **정답** ①

- ① (O) 대판 2010.9.30, 2010도7525
 ② (X)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③ (X)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11.30, 2007도4191)
 ④ (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3.24, 99도5275)

문 40] **정답** ③

- ① (O)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② (O) 대판 2007.3.15, 2006도9453
 ③ (X)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乙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乙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乙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

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9.8, 2011도 3489)

④ (O) 대판 2005.9.30, 2005도2712